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9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28.

발의자 : 김정재 · 추경호 · 곽대훈

주광덕 · 김석기 · 박대출

민경욱 · 김도읍 · 김성원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2조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3항 중 “2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